

#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입주자모집공고 [수원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이앱(App) 및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홈페이지(www.bs-xi.co.kr)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자이앱(App) 및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홈페이지(www.bs-xi.co.kr)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하며, 해당 예약 날짜 및 시간 외 입장이 불가합니다. [사전 예약 접수일정 및 방문가능기간(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 체결(예비입주자 포함)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개관(사전예약자에 한함) 및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접수 기간(당첨자에 한함) 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으며, 방문 일정 등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반자 1인만 입장가능하며, 운영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 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코로나 19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포함)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결과 37.5°C가 넘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 상담전화(☎1661-4386),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19.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주택형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    |
| - 토지임대주택(제1항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 가목)                            | 5년간          |       |    |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 당첨자(제3조제2항1.2.4.6.8호)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   |              | 85㎡초과 | 3년 |
|   | 그 외          | 85㎡이하 | 3년 |
|   |              | 85㎡초과 | 1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19.)** 현재 수원시 및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2019.03.19. 이전부터 계속거주)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미성년자(세대주)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자 본인 및 필요시 세대구성원)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19.09.13. 시행)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원천동에서 용인시 영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단, 용인시 영덕동에서 수원시 영통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20.07.24. 시행)에 따라 수원시 망포동 39-50번지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반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단, 화성시 반정동에서 수원시 망포동, 신동, 곡반정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1.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 전혼자녀 등)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공개됩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합니다.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의 300% 범위 이내의 예비입주자를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중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본인이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 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유의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안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당첨자발표  | 자격검증 서류제출<br>(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 계약체결  |
|-----|---|---|--|----------------------|--|---|---|
|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1순위(해당지역)<br>(수원시 2년 이상 거주)   | 1순위(기타지역)<br>(수원시 2년 미만 거주, 경기/서울/인천 거주) | 2순위<br>(경기/서울/인천 거주) |  |   |   |
| 일 정 | 2021.03.29.(월)  | 2021.03.30.(화)  | 2021.03.31.(수)                           | 2021.04.01.(목)       | 2021.04.07.(수)   | 2021.04.10.(토) ~<br>2021.04.16.(금) 7일간  | 2021.04.19.(월) ~<br>2021.04.30.(금) 12일간   |
| 방 법 | 인터넷 청약(08:00 ~ 17:30)   |   |  |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방문 제출</li> <li>- 사전방문예약제</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방문 계약</li> <li>- 사전방문예약제</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ul>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10:00~14:00)</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08:00~17:30)</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건본주택<br/>(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47-30번지)</li> </ul>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도시정비과-2774호(2021.02.2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21개동 총 2,607세대(임대 184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1,598세대  
[특별공급 748세대(일반[기관추천] 145세대, 다자녀가구 153세대, 신혼부부 303세대, 노부모부양 41세대, 생애최초 10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 주택<br>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br>표기<br>(타입)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br>(m <sup>2</sup> ) | 세대별<br>대지지분<br>(m <sup>2</sup> ) | 공급세대수      |          |           |          |           |          |          | 최하층<br>우선배정<br>세대수 |    |
|----------|------------|----|-----------------|------------------|-------------------------|---------|----------|------------------------|---------------------------|----------------------------------|------------|----------|-----------|----------|-----------|----------|----------|--------------------|----|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                                  | 총공급<br>세대수 | 특별공급     |           |          |           |          | 일반<br>공급 |                    |    |
|          |            |    |                 |                  |                         |         |          |                        |                           |                                  |            | 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생애<br>최초 |          |                    | 계  |
| 민영<br>주택 | 2021000087 | 01 | 048.8500A       | 48A              | 48.8500                 | 18.8700 | 67.7200  | 37.4000                | 105.1200                  | 29.7300                          | 90         | 9        | 9         | 18       | 2         | 6        | 44       | 46                 | 5  |
|          |            | 02 | 048.7000B       | 48B              | 48.7000                 | 18.6900 | 67.3900  | 37.2900                | 104.6800                  | 29.5900                          | 23         | 2        | 2         | 5        | -         | 2        | 11       | 12                 | 1  |
|          |            | 03 | 059.8700A       | 59A              | 59.8700                 | 20.7500 | 80.6200  | 45.8500                | 126.4700                  | 35.4000                          | 399        | 39       | 39        | 79       | 12        | 28       | 197      | 202                | 24 |
|          |            | 04 | 059.8200B       | 59B              | 59.8200                 | 20.8400 | 80.6600  | 45.8100                | 126.4700                  | 35.4200                          | 254        | 25       | 25        | 51       | 7         | 18       | 126      | 128                | 10 |
|          |            | 05 | 059.8400C       | 59C              | 59.8400                 | 20.5500 | 80.3900  | 45.8200                | 126.2100                  | 35.3000                          | 28         | 2        | 2         | 5        | -         | 2        | 11       | 17                 | 1  |
|          |            | 06 | 059.8700D       | 59D              | 59.8700                 | 21.1600 | 81.0300  | 45.8500                | 126.8800                  | 35.5800                          | 8          | -        | -         | 2        | -         | 1        | 3        | 5                  | 2  |
|          |            | 07 | 059.8400E       | 59E              | 59.8400                 | 20.9500 | 80.7900  | 45.8200                | 126.6100                  | 35.4700                          | 41         | 4        | 4         | 8        | 1         | 2        | 19       | 22                 | 9  |
|          |            | 08 | 074.5600A       | 74A              | 74.5600                 | 24.0100 | 98.5700  | 57.1000                | 155.6700                  | 43.2800                          | 182        | 18       | 18        | 36       | 5         | 12       | 89       | 93                 | 10 |
|          |            | 09 | 074.7600B       | 74B              | 74.7600                 | 23.9900 | 98.7500  | 57.2600                | 156.0100                  | 43.3600                          | 56         | 5        | 5         | 11       | 1         | 4        | 26       | 30                 | 2  |
|          |            | 10 | 074.5700C       | 74C              | 74.5700                 | 24.4500 | 99.0200  | 57.1100                | 156.1300                  | 43.4800                          | 8          | -        | -         | 2        | -         | 1        | 3        | 5                  | 2  |
|          |            | 11 | 084.3500A       | 84A              | 84.3500                 | 24.3300 | 108.6800 | 64.6000                | 173.2800                  | 47.7200                          | 259        | 25       | 25        | 52       | 7         | 18       | 127      | 132                | 14 |
|          |            | 12 | 084.9100B       | 84B              | 84.9100                 | 24.7200 | 109.6300 | 65.0300                | 174.6600                  | 48.1400                          | 164        | 16       | 16        | 32       | 4         | 11       | 79       | 85                 | 6  |
|          |            | 13 | 084.3600C       | 84C              | 84.3600                 | 24.7900 | 109.1500 | 64.6100                | 173.7600                  | 47.9300                          | 12         | -        | 1         | 2        | -         | 1        | 4        | 8                  | 3  |
|          |            | 14 | 099.5400        | 99               | 99.5400                 | 28.2400 | 127.7800 | 76.2400                | 204.0200                  | 56.1100                          | 74         | -        | 7         | -        | 2         | -        | 9        | 65                 | 4  |
| 합 계      |            |    |                 |                  |                         |         |          |                        |                           |                                  | 1,598      | 145      | 153       | 303      | 41        | 106      | 748      | 850                | 93 |

## ■ 주택형 표시안내

| 공고상주택형 | 048.8500A | 048.7000B | 059.8700A | 059.8200B | 059.8400C | 059.8700D | 059.8400E | 074.5600A | 074.7600B | 074.5700C | 084.3500A | 084.9100B | 084.3600C | 099.5400 |
|--------|-----------|-----------|-----------|-----------|-----------|-----------|-----------|-----------|-----------|-----------|-----------|-----------|-----------|----------|
| 약식 표기  | 48A       | 48B       | 59A       | 59B       | 59C       | 59D       | 59E       | 74A       | 74B       | 74C       | 84A       | 84B       | 84C       | 99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공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 등으로 없는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봅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VAT포함)

| 주택형       | 약식 표기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금액       |             |     |             | 계약금 (20%)       |                        | 중도금 (60%)               |                         |                         |                         |                         |                         | 잔금 (2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10%)<br>계약시 | 2차 (10%)<br>2021.05.19 | 1 차 (10%)<br>2021.11.19 | 2 차 (10%)<br>2022.05.19 | 3 차 (10%)<br>2022.11.21 | 4 차 (10%)<br>2023.04.19 | 5 차 (10%)<br>2023.08.21 | 6 차 (10%)<br>2023.12.19 |            | 입주지정일      |
| 048.8500A | 48A   | 2층     | 5      | 57,987,000 | 283,113,000 | -   | 341,100,000 | 34,110,000      | 34,110,000             | 34,110,000              | 34,110,000              | 34,110,000              | 34,110,000              | 34,110,000              | 34,110,000              | 34,110,000 | 68,220,000 |
|           |       | 3-5층   | 15     | 59,194,000 | 289,006,000 | -   | 348,200,000 | 34,820,000      | 34,820,000             | 34,820,000              | 34,820,000              | 34,820,000              | 34,820,000              | 34,820,000              | 34,820,000              | 34,820,000 | 69,640,000 |
|           |       | 6-10층  | 25     | 59,806,000 | 291,994,000 | -   | 351,800,000 | 35,180,000      | 35,180,000             | 35,180,000              | 35,180,000              | 35,180,000              | 35,180,000              | 35,180,000              | 35,180,000              | 35,180,000 | 70,360,000 |
|           |       | 11-15층 | 16     | 60,418,000 | 294,982,000 | -   | 355,40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71,080,000 |
|           |       | 16-25층 | 25     | 61,642,000 | 300,958,000 | -   | 362,600,000 | 36,260,000      | 36,260,000             | 36,260,000              | 36,260,000              | 36,260,000              | 36,260,000              | 36,260,000              | 36,260,000              | 36,260,000 | 72,520,000 |
|           |       | 26층이상  | 4      | 62,254,000 | 303,946,000 | -   | 366,200,000 | 36,620,000      | 36,620,000             | 36,620,000              | 36,620,000              | 36,620,000              | 36,620,000              | 36,620,000              | 36,620,000              | 36,620,000 | 73,240,000 |
| 048.7000B | 48B   | 2층     | 1      | 57,086,000 | 278,714,000 | -   | 335,800,000 | 33,580,000      | 33,580,000             | 33,580,000              | 33,580,000              | 33,580,000              | 33,580,000              | 33,580,000              | 33,580,000              | 33,580,000 | 67,160,000 |
|           |       | 3-5층   | 3      | 58,293,000 | 284,607,000 | -   | 342,90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68,580,000 |
|           |       | 6-10층  | 5      | 58,888,000 | 287,512,000 | -   | 346,40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69,280,000 |
|           |       | 11-15층 | 5      | 59,500,000 | 290,500,000 | -   | 350,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70,000,000 |
|           |       | 16-25층 | 9      | 60,690,000 | 296,310,000 | -   | 357,00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71,400,000 |
| 059.8700A | 59A   | 1층     | 13     | 73,270,000 | 357,730,000 | -   | 431,0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86,200,000 |
|           |       | 2층     | 16     | 74,834,000 | 365,366,000 | -   | 440,200,000 | 44,020,000      | 44,020,000             | 44,020,000              | 44,020,000              | 44,020,000              | 44,020,000              | 44,020,000              | 44,020,000              | 44,020,000 | 88,040,000 |
|           |       | 3-5층   | 71     | 76,415,000 | 373,085,000 | -   | 449,500,000 | 44,950,000      | 44,950,000             | 44,950,000              | 44,950,000              | 44,950,000              | 44,950,000              | 44,950,000              | 44,950,000              | 44,950,000 | 89,900,000 |
|           |       | 6-10층  | 120    | 77,197,000 | 376,903,000 | -   | 454,100,000 | 45,410,000      | 45,410,000             | 45,410,000              | 45,410,000              | 45,410,000              | 45,410,000              | 45,410,000              | 45,410,000              | 45,410,000 | 90,820,000 |
|           |       | 11-15층 | 58     | 77,996,000 | 380,804,000 | -   | 458,800,000 | 45,880,000      | 45,880,000             | 45,880,000              | 45,880,000              | 45,880,000              | 45,880,000              | 45,880,000              | 45,880,000              | 45,880,000 | 91,760,000 |
|           |       | 16-25층 | 86     | 79,560,000 | 388,440,000 | -   | 468,000,000 | 46,800,000      | 46,800,000             | 46,800,000              | 46,800,000              | 46,800,000              | 46,800,000              | 46,800,000              | 46,800,000              | 46,800,000 | 93,600,000 |
|           |       | 26층이상  | 35     | 80,359,000 | 392,341,000 | -   | 472,700,000 | 47,270,000      | 47,270,000             | 47,270,000              | 47,270,000              | 47,270,000              | 47,270,000              | 47,270,000              | 47,270,000              | 47,270,000 | 94,540,000 |
| 059.8200B | 59B   | 1층     | 6      | 72,590,000 | 354,410,000 | -   | 427,0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85,400,000 |
|           |       | 2층     | 8      | 74,154,000 | 362,046,000 | -   | 436,20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87,240,000 |
|           |       | 3-5층   | 30     | 75,718,000 | 369,682,000 | -   | 445,400,000 | 44,540,000      | 44,540,000             | 44,540,000              | 44,540,000              | 44,540,000              | 44,540,000              | 44,540,000              | 44,540,000              | 44,540,000 | 89,080,000 |
|           |       | 6-10층  | 50     | 76,483,000 | 373,417,000 | -   | 449,900,000 | 44,990,000      | 44,990,000             | 44,990,000              | 44,990,000              | 44,990,000              | 44,990,000              | 44,990,000              | 44,990,000              | 44,990,000 | 89,980,000 |
|           |       | 11-15층 | 50     | 77,265,000 | 377,235,000 | -   | 454,500,000 | 45,450,000      | 45,450,000             | 45,450,000              | 45,450,000              | 45,450,000              | 45,450,000              | 45,450,000              | 45,450,000              | 45,450,000 | 90,900,000 |
|           |       | 16-25층 | 87     | 78,829,000 | 384,871,000 | -   | 463,700,000 | 46,370,000      | 46,370,000             | 46,370,000              | 46,370,000              | 46,370,000              | 46,370,000              | 46,370,000              | 46,370,000              | 46,370,000 | 92,740,000 |
|           |       | 26층이상  | 23     | 79,611,000 | 388,689,000 | -   | 468,300,000 | 46,830,000      | 46,830,000             | 46,830,000              | 46,830,000              | 46,830,000              | 46,830,000              | 46,830,000              | 46,830,000              | 46,830,000 | 93,660,000 |
| 059.8400C | 59C   | 2층     | 1      | 74,630,000 | 364,370,000 | -   | 439,0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87,800,000 |
|           |       | 3-5층   | 3      | 76,194,000 | 372,006,000 | -   | 448,200,000 | 44,820,000      | 44,820,000             | 44,820,000              | 44,820,000              | 44,820,000              | 44,820,000              | 44,820,000              | 44,820,000              | 44,820,000 | 89,640,000 |
|           |       | 6-10층  | 5      | 76,976,000 | 375,824,000 | -   | 452,800,000 | 45,280,000      | 45,280,000             | 45,280,000              | 45,280,000              | 45,280,000              | 45,280,000              | 45,280,000              | 45,280,000              | 45,280,000 | 90,560,000 |
|           |       | 11-15층 | 5      | 77,775,000 | 379,725,000 | -   | 457,50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91,500,000 |
|           |       | 16-25층 | 10     | 79,339,000 | 387,361,000 | -   | 466,700,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93,34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오피스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품목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정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 분           |                 | 48A       | 48B | 59A | 59B | 59C | 59D | 59E | 74A | 74B | 74C | 84A | 84B | 84C | 99 | 합 계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2         | 1   | 10  | 6   | 1   | -   | 1   | 4   | 1   | -   | 7   | 4   | -   | -  | 37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 4   | 3   | -   | -   | -   | 2   | 1   | -   | 2   | 1   | -   | -  | 14  |     |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   | 6   | 4   | -   | -   | 1   | 3   | 1   | -   | 4   | 2   | -   | -  | 22  |     |
|               | 중소기업 근로자        | 2         | 1   | 8   | 5   | 1   | -   | 1   | 3   | 1   | -   | 5   | 3   | -   | -  | 30  |     |
|               | 장애인             | 3         | -   | 11  | 7   | -   | -   | 1   | 6   | 1   | -   | 7   | 6   | -   | -  | 42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50%)    | 5         | 1   | 20  | 13  | 1   | -   | 2   | 9   | 3   | -   | 13  | 8   | 1   | 4  | 80  |     |
|               | 서울, 인천 거주자(50%) | 4         | 1   | 19  | 12  | 1   | -   | 2   | 9   | 2   | -   | 12  | 8   | -   | 3  | 73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0%) | 13  | 4   | 56  | 36  | 4   | 2   | 6   | 26  | 8   | 2   | 37  | 23  | 2  | -   | 219 |
|               |                 | 일반공급(30%) | 5   | 1   | 23  | 15  | 1   | -   | 2   | 10  | 3   | -   | 15  | 9   | -  | -   | 84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2         | -   | 12  | 7   | -   | -   | 1   | 5   | 1   | -   | 7   | 4   | -   | 2  | 41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0%) | 5   | 2   | 20  | 13  | 2   | 1   | 2   | 9   | 3   | 1   | 13  | 8   | 1  | -   | 80  |
|               |                 | 일반공급(30%) | 1   | -   | 8   | 5   | -   | -   | -   | 3   | 1   | -   | 5   | 3   | -  | -   | 26  |
| 합 계           |                 | 44        | 11  | 197 | 126 | 11  | 3   | 19  | 89  | 26  | 3   | 127 | 79  | 4   | 9  | 748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 분                 | 내 용   |
|---------------------|---|
|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점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li> </ul>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b>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li> </ul>  |

|                    | <p>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br/>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                   |                                  |                   |                                  |             |       |       |       |              |       |       |       |              |         |       |       |      |         |         |       |
|--------------------|--|-------------------|----------------------------------|-------------------|----------------------------------|-------------|-------|-------|-------|--------------|-------|-------|-------|--------------|---------|-------|-------|------|---------|---------|-------|
| <p>청약자격<br/>요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li> </ul> <p>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85㎡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li>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85㎡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1순위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302 1005 2139 1212">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br/>(서울시)</th> <th>그 밖의 광역시<br/>(인천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수원시 및 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p>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br>(서울시)             | 그 밖의 광역시<br>(인천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수원시 및 경기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br>(서울시)   | 그 밖의 광역시<br>(인천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수원시 및 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점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점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특별공급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점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점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당첨자 발표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45세대

|          |   |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li>•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li> </ul>   |                  |
|          | <b>추천기관</b>   | <b>청약통장 구비여부</b> |
|          |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편의시설팀,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br>장기복무 제대군인(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br>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청약통장 필요없음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53세대

|          |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li> <li>•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li> <li>※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li> <li>•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li> </ul>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 포함)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li> </ul> </li> <li>•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단,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li> <li>•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에서 낙첨된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기준(수원시 2년 이상 거주)이 적용되지 않음.</li> </ul>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배 점 표  |         |                |    |  |
|--|---------|----------------|----|--|
| 평점요소   | 총<br>배점 | 배점기준           |    | 비 고  |
|  |         | 기 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br>자녀수(1)  | 40      | 5명 이상          | 40 |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4명             | 35 |  |
|  |         | 3명             | 30 |  |
| 영유아<br>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br>-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br>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br>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br>(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br>(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    |  |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    |  |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303세대

|      |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li> <li>※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li> </ul> |
|------|--|

|                 |  |
|-----------------|--|
|                 | <p>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lt;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gt;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li> <li>•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포함)만 1순위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ul> </li> <li>•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ul> </li> <li>•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li> </ul>   |
| <p>당첨자 선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li> <li>•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li> <li>•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li> <li>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li> </ul> </li> <li>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li> </ul> </li> <li>•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li> <li>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li> <li>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li> </ul> </li> <li>※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li> <li>-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li> <li>-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li> </ul> </li> </ul>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부부<br>우선공급<br>(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521,048원                 | 7,947,891원                 | 8,374,734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7,236,192원                | 8,513,046원                 | 8,513,046원                 | 9,025,258원                 | 9,537,469원                 | 10,049,681원                 |
| 신혼부부<br>일반공급<br>(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030,161원~<br>8,442,224원 | 7,094,206원~<br>9,931,887원  | 7,094,206원~<br>9,931,887원  | 7,521,049원~<br>10,529,467원 | 7,947,892원~<br>11,127,047원 | 8,374,735원~<br>11,724,628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236,193원~<br>9,648,256원 | 8,513,047원~<br>11,350,728원 | 8,513,047원~<br>11,350,728원 | 9,025,259원~<br>12,033,677원 | 9,537,470원~<br>12,716,626원 | 10,049,682원~<br>13,399,574원 |
| <p>-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 (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p> <p>-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p> |                   |                             |                           |                            |                            |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의원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6.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41세대

|      |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
|------|---|

|                 |  |
|-----------------|--|
|                 | <p>(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li> <li>- 세대주일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인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li>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li>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ul> </li> <li>•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li> </ul> |
| <p>당첨자 선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원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li> <li>•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li> <li>•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106세대**

|                 |  |
|-----------------|--|
| <p>신청자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li>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li> <li>- 세대주일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li> <li>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li> <li>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li> <li>④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li>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됨</li> <li>※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년도 납세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li> <li>※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사업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li> <li>※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li> </ul> </li> </ol> </li> </ul> |
| <p>당첨자 선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li> </ul>   |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우선공급<br>(기준소득, 70%) | 130% 이하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777,362원                 | 10,332,258원                 | 10,887,154원                 |
| 생애최초 일반공급<br>(상위소득, 30%) | 130% 초과~160% 이하 | 7,839,209원~<br>9,648,256원   | 9,222,468원~<br>11,350,728원 | 9,222,468원~<br>11,350,728원 | 9,777,363원~<br>12,033,677원 | 10,332,259원~<br>12,716,626원 | 10,887,155원~<br>13,399,57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 합니다. 다만, 세대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으로 합니다.
- 가구당 연간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
|------------|---|
| 청약자격<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월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본 아파트의 해당 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li> <li>※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li> <li>- 세대주일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li> <li>•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랍니다.</li> </ul>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 조회요망</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li> <li>•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제한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기 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됩니다.</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 <li>•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li> </o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li> <li>-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li> <li>2) 청약부금 변경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3)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ol> </li> <li>-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수원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접수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않음]</li> <li>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3)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변경 시 1순위 청약 신청 가능함)</li> </ol> </li> <li>-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li> <li>•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수원시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li> <li>•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li> </ul> |
|--|--|

## 2.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거주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
| 해당지역<br>(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br>/ 기타지역<br>(수원시 2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 1순위 | 전 주택형<br><br>• 85㎡이하 : 가점제: 100%<br><br>• 85㎡초과 : 가점제: 50%<br>추첨제: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li> <li>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분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됩니다.(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li> </ul> </li> </ol> </li> <li>• 추첨제 우선공급(무주택자 우선공급) 적용 : 1순위 추첨제 공급 시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②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1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 조건 승낙이 불가)</li> </ul> </li> </ol> </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 청약부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li> </ul> |

|  |     |              |   |
|--|-----|--------------|---|
|  |     |              | 2) 85㎡ 초과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br>-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대주가 아닌 자</li> <li>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li> <li>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li> <li>④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미만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되지 않는 자</li> </ul> </li> </ul> |
|  | 2순위 | 전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     |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li> </ul>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수원시에 2년 이상(2019.03.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시) | 그 밖의 광역시 (인천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수원시 및 경기도) |
|-------------|-------------------|----------------|-------------------------------|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4.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등   |
|---------|------|----------------------|----|-----------------|----|---|
| ④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li> <li>■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li> </ul>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② 부양가족수       | 35점 | 0명(청약신청자 본인)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부양가족 산정 시)</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ol> </li> <li>※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ul>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li> </ul>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 총 점           | 84점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5.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분           | 신청자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                       |  |
|-----------------------|--|
|                       |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p> <p>※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동 규칙 제2조 제7의 3)</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p>  |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 IV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 본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청약신청 접수일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b>2021.03.29.(월)</b><br>(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br>(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br>• 사업주체 건본주택 |
| 일반공급 | 1순위 해당지역 (수원시 2년 이상 거주)           | <b>2021.03.30.(화) 08:00~17:30</b>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br>• 대행은행 창구   |
|      | 1순위 기타지역 (수원시 2년 미만, 수도권 거주)      | <b>2021.03.31.(수) 08:00~17:30</b>  |                       |   |
|      | 2순위 (수도권 거주)                      | <b>2021.04.01.(목) 08:00~17:30</b>  |                       |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불가)허용됩니다. (방문접수시간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접수시간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며, 수원시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으로 접수해야 함. (타지역 청약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수원시 2년 이상(2019.03.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 청약가능합니다.
- 수원시 2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일에 청약가능합니다. (해당지역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수원)" 1순위에서 청약 마감시 기타지역(1순위) 및 후순위는 더 이상 접수받지 않습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라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구 분  |   | 구비사항   |           |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V 당첨자 발표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일시 : <b>2021.04.07(수)</b><br>• 확인방법<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br>-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반공급 | 1순위                            |  |
|      | 2순위                            |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건분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1.04.07(수) ~ 2021.04.16(금) (10일간)   |
| 인터넷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gt;청약제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한 자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1.04.0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방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li> <li>•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주택형별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우선공급 적용합니다.</li> </ul> </li> <li>*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li> </ul>   |

|      |   |
|------|---|
|      | <p>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br/>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p> <p>※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1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 조건 승낙이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수원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합니다.</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li> </ul>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당첨자 중 부적격통보를 받고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li> </ul>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민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함)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의 300% 범위 이내의 예비입주자를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여부 및 부적격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순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순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VI 사전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1.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 구분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장소  |
|------------------------------|--|---|
|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br>(특별공급, 일반공급) | 2021.04.10.(토)~2021.04.16.(금) 7일간<br>(사전예약시간 내 방문) |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건본주택<br>(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47-30번지)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의 300% 범위 이내의 예비입주자를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공통 안내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의 서류제출 기간,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www.bs-xi.co.kr)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홈페이지(www.bs-xi.co.kr)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 당 서 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⑥-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⑦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⑧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 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
| • 가접제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 당 서 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당첨자<br>· 가점제<br>당첨<br>예비입주자 |         |          |                      | 직계존속     |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br>-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br>-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녀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br>-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제3자<br>대리인 신청<br>시 추가사항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③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 자          | ○       |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br>•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표2>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 당 서 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특별공급<br>공통서류  | ○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⑦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⑨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br>-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       |          | ① 기본증명서                      | 자녀   |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               | ○       |          |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br>[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   |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일 경우  |
|               |         | ○        | ⑥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 ⑧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        | ③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 ⑤ 임신증명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 당 서 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또는 배우자)         |  |
|                   |         | ○        | ⑥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br>-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⑧ 소득증빙 서류 (아래 <표3>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③ 기타(가점 확인 서류) (<표1> 참고) | -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br>-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br>-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④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                   | ○       |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4> 참고)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③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서류접수 이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br>※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 ②, ③ 해당직장<br>④ 국민연금공단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 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br>② 법인등기부등본   | ① 세무서<br>② 등기소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br>※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br>②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해당 직장/세무서<br>② 해당 직장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br>※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br>② ①번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 직장<br>② 국민연금공단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장소 비치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br>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br>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소득세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br>②,③ 해당직장/세무서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2. 계약 체결 시 일정 및 구비서류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기간  | 비고  |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 <b>2021.04.19.(월) ~ 2021.04.30.(금) 12일간 (사전예약시간 내 방문)</b> | • 당사 견본주택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47-30번지)<br>※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기간 내에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하며, 계약기간 내 예약을 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한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계약금             | KB국민은행 | 221701-04-499457 | 111의1정자지구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
| 분양대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 분양대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계좌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세대별로 상이하며, 향후 모계좌(KB국민은행, 221701-04-50136 예금주: 111의1정자지구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중 중도금·잔금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 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본인<br>계약 시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본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 ○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br>• 본인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단, 대리인 계약 시 불가)<br>※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 비치  |
|            |      | ○   |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 본인   |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예 : 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
| 대리<br>계약 시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위임장                   | 본인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 이후 휴대폰번호 및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보증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함.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관련 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기존주택 처분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 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큰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2.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주택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함)를 수분양자가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4.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3. 공유지분으로 주택 및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분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5.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6.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매매 등 처분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①호와 제②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분상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7호의 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
- 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해당 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⑨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보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공급 계약서의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제외한 공급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단, 2007.09.0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09.01.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함)
      - 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봅니다.
      - 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닙니다.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로 봄)
      - "계약취소 주택재공급"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소유)으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 ③ 분양주택( 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 7.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 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는 중도금 1회차~중도금 4회차 이내로 지원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적용 중도금(5회차 10%, 6회차 10%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오니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후불제 적용 시,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Ⅷ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1. 발코니 확장 공사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 는 추후 통보함)

####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주택형) | 확장 금액      | 계약금 10%<br>(계약시) | 중도금 10%<br>(2021.11.19.) | 잔금 80%<br>(입주지정기간) | 비고 |
|---------|------------|------------------|--------------------------|--------------------|----|
| 48A     | 16,520,000 | 1,652,000        | 1,652,000                | 13,216,000         |    |
| 48B     | 15,790,000 | 1,579,000        | 1,579,000                | 12,632,000         |    |
| 59A     | 17,540,000 | 1,754,000        | 1,754,000                | 14,032,000         |    |
| 59B     | 17,670,000 | 1,767,000        | 1,767,000                | 14,136,000         |    |
| 59C     | 18,070,000 | 1,807,000        | 1,807,000                | 14,456,000         |    |
| 59D     | 18,730,000 | 1,873,000        | 1,873,000                | 14,984,000         |    |
| 59E     | 19,260,000 | 1,926,000        | 1,926,000                | 15,408,000         |    |
| 74A     | 18,480,000 | 1,848,000        | 1,848,000                | 14,784,000         |    |
| 74B     | 18,400,000 | 1,840,000        | 1,840,000                | 14,720,000         |    |
| 74C     | 19,880,000 | 1,988,000        | 1,988,000                | 15,904,000         |    |
| 84A     | 19,560,000 | 1,956,000        | 1,956,000                | 15,648,000         |    |
| 84B     | 19,300,000 | 1,930,000        | 1,930,000                | 15,440,000         |    |
| 84C     | 20,720,000 | 2,072,000        | 2,072,000                | 16,576,000         |    |
| 99      | 22,500,000 | 2,250,000        | 2,250,000                | 18,000,000         |    |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계약금     | KB국민은행 | 221701-04-501750 | 111의1정자지구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
| 발코니 확장공사비 중도금, 잔금 |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 공급대금 중 중도금·잔금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카탈로그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유상옵션(추가 선택 품목)

### ① 유상옵션(가구 및 마감)

(단위 : 원 / VAT포함)

| 구분            |                 | 품목  | 48A       | 48B       | 59A       | 59B       | 59C       | 59D       | 59E       | 74A       | 74B       | 74C       | 84A       | 84B       | 84C       | 99        |           |
|---------------|-----------------|---|-----------|-----------|-----------|-----------|-----------|-----------|-----------|-----------|-----------|-----------|-----------|-----------|-----------|-----------|-----------|
| 개별<br>옵션      | A.포세린타일         | 거실/주방/현관바닥(유럽산포세린타일)  | 770,000   | 770,000   | 880,000   | 770,000   | 770,000   | 880,000   | 770,000   | 1,100,000 | 1,100,000 | 1,100,000 | 1,210,000 | 1,210,000 | 1,210,000 | 1,320,000 |           |
|               | B.현관중문          | 현관중문  | 1,870,000 | 1,870,000 | 1,870,000 | 1,760,000 | 1,760,000 | 1,870,000 | 1,760,000 | 1,760,000 | 1,870,000 | 1,760,000 | 1,760,000 | 1,870,000 | 1,760,000 | 1,870,000 |           |
| Package<br>옵션 | A. 마감 특화        | 거실아트월+거실벽+주방벽(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복도 일부 스위트판넬, 주방상판 업그레이드(E-Stone), 주방수전 업그레이드       | 2,860,000 | 3,080,000 | 3,410,000 | 3,080,000 | 3,190,000 | 3,410,000 | 3,190,000 | -         | -         | -         | -         | -         | -         | -         | -         |
|               |                 | 거실아트월+거실벽+주방벽+복도 일부(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복도 일부 스위트판넬, 주방상판 업그레이드(E-Stone), 주방수전 업그레이드 | -         | -         | -         | -         | -         | -         | -         | -         | 3,630,000 | 3,630,000 | 3,630,000 | 3,630,000 | 3,850,000 | 3,630,000 | 3,960,000 |
|               | B. 조명 특화        | 거실(우물천장 4면 간접등), 주방(우물천장 4면 간접등+천정 스위트판), 거실(리니어등), 거실/침실 등기구 옵션                | 3,080,000 | -         | 3,410,000 | -         | 3,300,000 | 3,410,000 | 3,300,000 | -         | -         | -         | -         | -         | -         | -         | -         |
|               |                 | 거실(우물천장 4면 간접등), 거실(리니어등), 거실/침실 등기구 옵션   | -         | 2,860,000 | -         | 2,97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실(우물천장 4면 간접등), 주방(우물천장 4면 간접등+천정 스위트판), 거실/현관/복도(리니어등), 거실/침실 등기구 옵션          | -         | -         | -         | -         | -         | -         | -         | -         | 4,510,000 | 4,070,000 | 4,620,000 | 4,840,000 | 4,510,000 | 5,060,000 | 5,280,000 |
|               | C. 욕실 특화        | 욕실 유럽산타일, 세면기, 욕실수전, 비데일체형 양변기  | 2,420,000 | 2,42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4,510,000 |
| 공간<br>옵션      | A. 와이드다이닝       | 홈바+팬트리+조명스피커  | -         | -         | -         | -         | -         | -         | -         | -         | -         | -         | 3,740,000 | -         | 3,740,000 | 4,620,000 |           |
|               | B. 조망형 와이드다이닝   | 현관창고+홈바+맘스테스크+팬트리+조명스피커   | -         | -         | -         | -         | -         | -         | -         | -         | -         | -         | 4,840,000 | -         | 4,840,000 | 5,280,000 |           |
|               | C. 침실1(안방) 불박이장 | 침실1(안방) 불박이장  | -         | -         | -         | -         | -         | 3,850,000 | 3,630,000 | -         | 3,520,000 | 3,740,000 | -         | 3,740,000 | 3,960,000 | 4,070,000 |           |
|               | D. 팬트리          | 알파룸→팬트리   | -         | -         | -         | -         | -         | -         | -         | 1,100,000 | -         | 1,100,000 | -         | -         | -         | -         |           |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②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 주택형                          | 선택  |    | 설치 위치                 | 금액        | 제조사  |
|------------------------------|-----|----|-----------------------|-----------|------|
| 48m <sup>2</sup> (A,B)       | 선택1 | 2대 | 거실, 침실1               | 3,040,000 | LG전자 |
|                              | 선택2 | 3대 | 거실, 침실1, 침실2          | 4,400,000 |      |
| 59m <sup>2</sup> (A,B,C,D,E) | 선택1 | 2대 | 거실, 침실1               | 3,050,000 |      |
|                              | 선택2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5,500,000 |      |
| 74m <sup>2</sup> (A,B,C)     | 선택1 | 2대 | 거실, 침실1               | 3,250,000 |      |
|                              | 선택2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5,750,000 |      |
| 84m <sup>2</sup> (A,B,C)     | 선택1 | 2대 | 거실, 침실1               | 3,600,000 |      |
|                              | 선택2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6,600,000 |      |
| 99m <sup>2</sup>             | 선택1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4,800,000 |      |
|                              | 선택2 | 5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7,800,000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침실1 매립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③ 유상옵션 (빌트인가전, 시스클라인)

1. 빌트인 가전(주방가전)

(단위 : 원 / VAT 포함)

| 구분     | 품목        | 모델명         | 공급금액      | 제조사   | 비고                  |
|--------|-----------|-------------|-----------|-------|---------------------|
| 빌트인 가전 | 빌트인 냉장고   | S711SI24B   | 5,750,000 | LG 전자 |                     |
|        |           | S691SI34BS2 | 7,650,000 |       |                     |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K221PR14B   | 1,450,000 |       |                     |
|        | 식기세척기     | DUB22SB     | 1,100,000 |       |                     |
|        | 광파오븐      | MZ385EBTD   | 540,000   |       |                     |
|        | 인덕션 쿡탑    | BEI3GTBI    | 1,220,000 |       | 하부 드로워 포함<br>인덕션 3구 |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빌트인가전옵션은 주택형에 따라 선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션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클라인

(단위 : 원 / VAT 포함)

| 주택형                          | 선택안 |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공급업체      |
|------------------------------|-----|------|----------------------------|-----------|-----------|
| 48㎡(A,B)                     | 2 대 | 선택 1 | 거실 , 주방                    | 1,750,000 | 자이에스앤디(주) |
|                              |     | 선택 2 | 거실 , 침실 1                  | 1,750,000 |           |
|                              | 3 대 | 선택 3 | 거실 , 주방 , 침실 1             | 2,625,000 |           |
|                              | 4 대 | 선택 4 | 거실 , 주방 , 침실 1, 침실 2       | 3,500,000 |           |
| 59㎡(A,B,C,D,E)<br>74㎡(A,B,C) | 2 대 | 선택 1 | 거실 , 주방                    | 1,750,000 |           |
|                              |     | 선택 2 | 거실 , 침실 1                  | 1,750,000 |           |
| 84㎡(A,B,C) / 99㎡             | 3 대 | 선택 3 | 거실 , 주방 , 침실 1             | 2,625,000 |           |
|                              | 5 대 | 선택 4 | 거실 , 주방 , 침실 1, 침실 2, 침실 3 | 4,375,000 |           |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클라인은 함께 제공하는 리모컨으로 제어 가능하며, 시스클라인 앱으로 실내공기질 확인 및 제어 가능합니다.
- 시스클라인 제품(리모컨 타입)은 KC인증 진행중으로 유상옵션 행사 시까지 KC인증을 득할 예정이며, 행사 시 KC인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유상옵션 선택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 3.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① 유상옵션(가구 및 마감)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유상옵션(가구 및 마감) | KB국민은행 | 006001-04-326347 | 지에스건설(주) |

- 유상옵션(가구 및 마감)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유상품목(빌트인 가전, 시스템 에어컨, 시스클라인 등)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상기 계좌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시스템에어컨 | 기업은행  | 600-005153-04-054 | (주)홈이엘 |

-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유상품목(가구 및 마감, 빌트인가전, 시스클라인 등)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G전자 가전옵션의 옵션대금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가전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금시 동·호수성함(예: 101101홍길동)을 명기하여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

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상기 계좌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유상옵션(빌트인 가전, 시스클라인)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빌트인가전, 시스클라인 | 신한은행  |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 자이에스엔디(주) |

- 유상옵션(주방가전, 시스클라인) 공사비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가구 및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클라인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엔디(주)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상기 계좌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상옵션 계약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IX 기타 계약자 안내

### 1.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2. 입주예정월 및 부대시설 안내

- **입주예정월 : 2024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으로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평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부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관리/경로당,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 3.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고기밀창호         |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각1개소 이상 설치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적용   |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내 사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설치  |
| 절수설비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              |                   |
|-------------|--------------|-------------------|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4.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1212020-101-0007200 호 | 658,610,160,000 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5.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건축감리             | 전기            | 소방·정보통신       |
|---------|------------------|---------------|---------------|
| 회사명     |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 ㈜한국코아엔지니어링    | ㈜에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
| 감리금액    | 6,745,685,100    | 1,208,992,200 | 1,078,000,000 |
| 사업자등록번호 | 211-86-20779     | 604-81-32166  | 229-81-06905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6. 사업주체 현황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회사명                       |
|---------|------------------------------------|-----------------------------|
| 상호      | 111-1구역(정자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에스건설주식회사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107, 2층(정자동, 동덕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
| 법인 등록번호 | 135971-0001679                     | 110111-0002694              |

## X 기타 유의사항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구분 | 사항   | 내용   |
|----|------|--|
| 예매 | 일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li> </ul> |
|    | 인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홍보물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15년 5월로 소방내진설계가 미적용됩니다.</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li> <li>수원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풍동시험 등 구조기준을 추가 검토하여 경미한 설계변경 처리 예정입니다.</li> </ul>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 현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동측에는 장안로, 서측에는 27m도로, 남측에는 정자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헨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li> <li>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li> <li><b>본 단지는 북측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및 공원, 서측에는 SKC공장이 인접하여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b></li> <li>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학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수원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li> <li>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파장초등학교이며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li> <li>중학교의 경우 북부중학군 1구역[매향중, 삼일중, 수성중, 수원북중, 수원제일중, 수일여중, 수일중, 영복여중, 조원중, 송원중]과 북부중학군 2구역[대평중, 명인중, 울전중, 이목중, 정천중, 천천중, 송원중(1구역, 2구역 공동지원 가능)]에 속하는 <b>공동학군</b>이며 배정방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군(구)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단지               | 내방 및 방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li> <li>112동 후면에는 아파트용, 117동 후면에는 상가용 발전기실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일부 동의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는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li> <li>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121동은 임대동입니다.</li> <li>108, 109, 110, 111, 115, 116, 117동은 전면보다 후면이 약 3m 높으며 차량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105동 동측면, 111동 전면에 광장이 조성되어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서측도로에 인접한 동은 SKC공장을 접하고 있어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116동 하부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115동 하부에는 환경관리원실이 설치됩니다.</li> <li>101동 1호라인, 102동 1,4호라인, 103동 4호라인, 106동 5호라인, 107동 1호라인, 113동 5호라인, 114동 1호라인은 거실 아트월이 거실/자녀방 간벽에 설치됩니다.</li> <li>108, 109, 110, 113동 지하층에 클럽자이안(커뮤니티시설)이 위치하며, 선콘 2개소에 외부계단 및 승강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110, 111, 112동에 인접하여 농구코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접세대의 소음 등을 고려하여 배드민턴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103, 104, 114, 115, 117동에 인접하여 단지 차량출입구, 경사로 지붕, 문주가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은 소음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112동 1호라인 전, 후면, 118동 1호라인 측면에 상가용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위치하여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 단지계획 (설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li> </ul>  |

|          |  |
|----------|--|
| 디자인, 마감) | <p>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생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동별로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배치의 레벨차이 부분은 경사로, 옹벽 또는 조경 등으로 처리되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의 레벨은 해발 51, 54, 57m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로로 연결됩니다.</li> <li>• 단지 차량출입구는 3개소이며 지하주차장 진출입경사로, 회차 공간 등으로 인접동은 소음, 매연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출입구에 스쿨버스존이 3개소 설치되며, 냉방 및 난방은 공급되지 않습니다.</li> </ul> |
| 외관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며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문주는 단지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측벽의 특화 및 마감계획, 재질 등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
| 공용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li> <li>• 커뮤니티 시설 등은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상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하며 인접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라운지,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등) 및 부속동(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li> <li>• 클럽자이안(커뮤니티시설)은 108, 109, 110, 113동 지하층에 위치하며 선콘이 2개소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커뮤니티 내 시설의 용도와 크기 등은 트랜드 등을 반영하여 변경 예정이며 향후 설계변경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ul> |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지하층 및 지상1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에어컨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li> <li>•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휨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펌프실, 우수저류조실 등 기계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간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li> </ul>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3,671대(전기차 주차 38개소 포함), 근린생활시설 22대, 총 3,693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모든 동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38개소(완속30, 급속8)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지하1층 차로부분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li> <li>• 주차장 각 층은 3개의 레벨로 구성되며 각 레벨차이 부분으로의 보행자의 이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입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3개의 상가 지하층에 분리 배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및 입주민 편의를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근린생활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계획에 따라 전체면적, 전용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의 주차 위치는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단위세대</p> | <p>평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는 2,400mm)</li> <li>•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침실 등의 크기가 작아 생활의 불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크기를 확인바랍니다.</li> <li>• 기본형 세대는 상하층 세대가 확장형 선택 시 단열기준 만족을 위해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높아지며 천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li>• 48A, B형은 침실1 발코니, 59C형은 침실2 발코니, 74B 및 84B형은 침실1 발코니에 세탁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다용도실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침실발코니에 세탁기가 설치된 경우 작동 시 인접침실과 인접세대에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시행인가도서에 표현된 가구는 공간계획을 위한 계획안이며 입주 시 제공되는 가구, 위생기구 및 설비의 위치 및 크기 등은 모델하우스 및 분양계약 자료(분양카탈로그 등)에 기준입니다.</li> <li>• 48A, B형의 거실에서의 침실1 발코니 출입문 옵션행사에 따라 분합창은 분합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창호는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출입 분합문은 유지관리를 위해 창호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59A형의 안방 및 침실3은 각 동의 중간세대와 측세대 위치에 따른 공차의 차이로 실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미한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li> <li>• 59A, 59D의 주방창호는 상부장 설치, 생활의 편의 등을 위해 일부 이동 예정이며 향후 설계변경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li> <li>• 84A, 84C의 거실창호의 폭이 인가 시 3.0m이나 본시공 시 3.3m로, 99형 거실창폭은 3m에서 3.6m로 확대 시공 예정이며 향후 설계변경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아파트 창호의 철재난간은 본시공 시 유리난간으로 변경 시공 예정이며 향후 설계변경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단, 임대동은 입면분할창)</li> <li>• 각 형의 침실에서의 발코니 출입창호는 생활의 편리 및 창호의 유지관리를 위해 폭은 확대하고 높이는 축소하여 시공 예정이며, 향후 설계변경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li> </ul> |
| <p>발코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li> <li>• 또한, 발코니외부측벽및천장에최소결로방지를위한추가단열재및마감재가시공될수있으며이로인해발코니내부폭및크기가축소될수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림,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재 등 비상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 또는 세대간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으며, 형별로 다르므로 확인바랍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

|          |  |
|----------|--|
| 창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용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li> <li>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거실 및 침실의 난간은 유리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각 실의 창호 크기는 사용의 편리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1층 세대의 발코니 출입 분합문은 유지관리를 위해 천장보다 높이가 낮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
| 가구 및 마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li> <li>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li> <li>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li> <li>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유상옵션 품목인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방 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li> <li>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li> <li>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li> <li>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전기기계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li> <li>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li> <li>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벽부형 에어컨 냉매배관 BOX가 기본 제공됩니다.</li> <li>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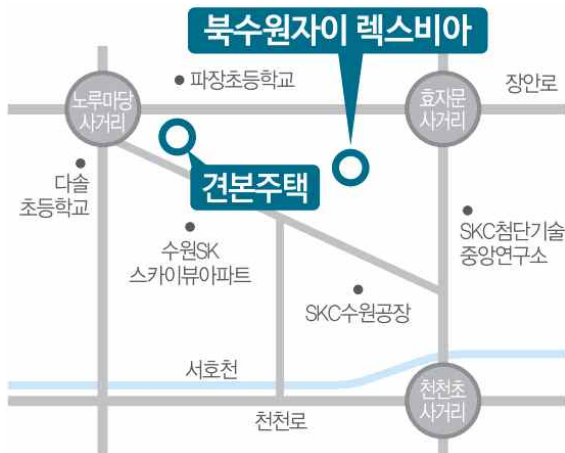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li> <li>•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 건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li> </ul> |

■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홈페이지 : [www.bs-xi.co.kr](http://www.bs-xi.co.kr)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47-30번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사전예약제로 건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           |   |
|-----------------------|-----------|---|
| 입주자모집공고               |           | 2021.03.19. (금)                                     |
| 특별공급                  |           | 2021.03.29. (월)                                     |
| 일반공급                  | 1순위(해당지역) | 2021.03.30. (화)                                     |
|                       | 1순위(기타지역) | 2021.03.31. (수)                                     |
|                       | 2순위       | 2021.04.01. (목)                                     |
| 당첨자발표                 |           | 2021.04.07. (수)                                     |
| 사전 서류접수               |           | 2021.04.10. (토) ~ 2021.04.16. (금) 7일간               |
| 계약체결                  |           | 2021.04.19. (월)~ 2021.04.30. (금) 12일간               |
| <b>분양문의 1661-4386</b> |           | 총 2,607세대 중 일반공급 1,598세대<br>48㎡, 59㎡, 74㎡, 84㎡, 99㎡ |